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

임종우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심의2팀장

## 언론보도와 선거기사심의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한 가지는 선거 관련 정보를 저널리즘 보도원칙에 따라 전달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반해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당 및 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 및 정치적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관련 이슈에 대해 맥락적 이해를 돕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sup>1)</sup>

언론미디어의 선거에 관한 통상적인 보도·논평은 허용되며, 이것은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는 모든 미디어의 경영관리자나 기자가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하는 경우와 대담·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언론사 등 모든 언론미디어에 선거에 관한 보도에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의무를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에서 언론미디어는 제한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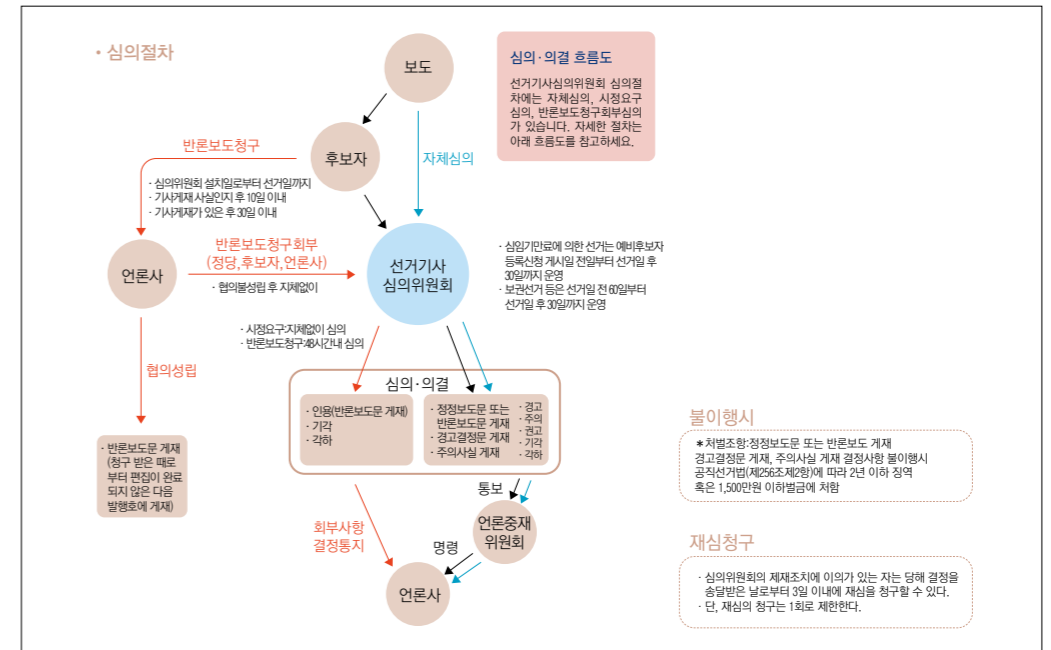
1) 김선호, 백영민, 장경은 (2021). <선거와 미디어: 유권자의 관점에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8면.  
2) 박용상 (2013). <언론의 자유>. 서울: 박영사. 916면.

이러한 언론미디어의 공정보도의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론사의 공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사실에 어긋나거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하기 위한 것”<sup>3)</sup>이라고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언론미디어의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미디어별로 심의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sup>4)</sup>,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일 전후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에 대해 판단하고, 후보자, 정당, 언론사의 반론 보도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한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란 무엇을 말하는지 공직선거법에 명시적 정의를 담고 있지는 않으나<sup>5)</sup>, 언론미디어의 공정보도의무가 기사에 기술된 언어적 표현부터 사진이나 이미지, 기사의 배치 등 편집에 이르기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보도의 결과물 전반에 대해 적용되므로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기사의 범위도 이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sup>6)</sup>

<그림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흐름도



3)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3헌가18 참조.  
4)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참조.  
5)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는 선거기사를 '사실·논평·광고 그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1. 11. 17. 제20대 대선-재심1 결정 참조.

### 선거기사 심의기준 구성 및 제재조치

언론보도가 공정성을 유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공정정보의무를 갖는 언론사가 사전에 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제8조의2 제4항 준용)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기타 선거에 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담아 공표하고 있다.<sup>7)</sup> 선거기사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는 ①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②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 주기, 배포범위, ③ 선거기사의 게재시기에 따른 영향력, ④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⑤ 기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심의기준은 크게 일반 심의기준과 세부 심의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일반 심의기준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가치를, 세부 심의기준은 기사 유형별로 불공정 기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기준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심의기준과 세부 심의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표 1〉 선거기사 심의기준의 구성

일반 심의기준		세부 심의기준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선거기사 여론조사보도 인터뷰 및 인용기사 사진 게재 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①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② 경고결정문 게재, ③ 주의사실 게재, ④ 경고, 주의 또는 권고의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④는 언론사에 위반 사실을 알려 향후 반복하여 심의기준을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데 비해 ① 내지 ③은 해당 보도문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언론사 내부만이 아니라 독자들도 언론사가 심의기준 위반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7)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기사심의기준을 게시(<https://www.pac.or.kr/kor/pages/?p=16>)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시마다 모니터링 대상매체에 공문과 함께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송부하고 있다.

### 제20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제20대 대선 선심위'라 함)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2021년 7월 1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하면서 총 15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0대 대선 선심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sup>8)</sup>되었으며, 사무처가 신문, 정기간행물 등 지면매체 435개, 뉴스통신 12개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자체 모니터링해 상정한 73건과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 12건, 재심청구 2건 등 총 87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해 역대 대선 선심위 가운데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다.

〈표 2〉 제20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처리현황

#### 1) 자체심의

(2021. 7. 11. ~ 2022. 4. 8.)

간별	계	위반 유형			보도 유형					결정 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일간신문	18	7	11	1	9	1			7	1	3	14		
지역신문	43	20	23	7	23		1	10	2	3	11	26	2	1
종합주간지	3	2	1	1	1			1			1	2		
지역주간지	3	2	1	1	1			1			2	1		
월간지	0													
뉴스통신	6		6		6							6		
총계 (%)	73 (100)	31 (42.5)	42 (57.5)	10 (13.7)	40 (54.8)	1 (1.4)	1 (1.4)	12 (16.4)	9 (12.3)	4 (5.5)	17 (23.3)	49 (67.1)	2 (2.7)	1 (1.4)

#### 2) 시정요구

(2021. 7. 11. ~ 2022. 4. 8.)

간별	계	결정 내용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안내문 송부	취하	기각
중앙일간지	12		3	2			7
총계 (%)	12 (100.0)	0 (0.0)	3 (25.0)	2 (16.7)	0 (0.0)	0 (0.0)	7 (58.3)

8) 심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회(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한국기자협회),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다.

3) 재심청구

(2021. 7. 11. ~ 2022. 4. 8.)

간별	계	결정내용	
		원심결정 변경	기각
중앙일간지	2	1	1
총계 (%)	2 (100.0)	1 (50.0)	1 (50.0)

자체심의의 경우,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43건), 중앙일간지(18건), 뉴스통신(6), 종합주간지·지역주간지(각 3건) 순으로 의결건수를 보였으며, 시정요구는 모두 중앙일간지(12건)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졌다. 일간지에 대한 심의건수가 많은 것은 대선이 다른 선거에 비해 각종 공약, 정책,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등에 대한 일별 정보량 자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9)</sup>

제재조치는 '주의'(49건)가 가장 많았으며, '경고'(17건), '주의사실 게재'(4건), '권고'(2건)순이었으며, '안내문 송부'<sup>10)</sup>가 1건 있었다. '주의사실 게재'는 제18대 대선 선심위의 '사과문 게재'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결정이다.<sup>11)</sup>

〈표 3〉 역대 선거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처리현황<sup>12)</sup>

심의유형	제16대 대선 (2002년)	제17대 대선 (2007년)	제18대 대선 (2012년)	제19대 대선 (2017년)	제20대 대선 (2022년)
자체심의	12	35	47	9	73
시정요구심의	1	2	4	1	12
재심	-	-	3	-	2
합계	13	37	54	10	87

대선의 경우, 다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중 가장 긴 5년 주기로 선거가 실시되는 점, 선거별로 기사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다는 점<sup>13)</sup>에서 선거별 심의건수 비교의 의미가 크

9) 역대 대선 선심위 의결건수도 일간지-주간지-월간지 등의 순이었다.

10) '안내문 송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제재조치는 아니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심의·의결) 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언론사에 공문으로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회는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의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7. 30.2013헌가 8)을 반영하여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12) 2000년 2월 16일 시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 전후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되었으며, 대선은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설치되었다.

13) 선심위의 구성, 운영기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제19대 대선은 탄핵에 의한 조기 선거로 실시되어 선심위의 활동 기간이 역대 대선 선심위 중 가장 짧은 81일에 불과했다.

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역대 가장 많은 심의 건수는 적극적인 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요 결정 사례

제20대 대선 선심위 사례 중 주목할 만한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많은 심의기준 위반 사례는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로, 73건의 자체심의 의결 안건의 절반이 넘는 40건(54.8%)이었다. 후보자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음에도 다수 언론이 '골든 크로스', '역전' 등의 과장된 표현을 제목 등에서 사용해 심의기준<sup>14)</sup>을 위반하였다. 해당 기준은 선거기사 심의기준뿐 아니라 한국기자협회가 2016년 12월 제정한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sup>15)</sup> 제16조(오차범위 내의 결과보도)에도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의 위반이 기자나 언론사의 이해부족이나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주목 등을 받기 위한 보도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선이 당선인과 2위 득표자의 득표율 차이가 1% 미만<sup>16)</sup>일 정도로 치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관행적 보도행태가 유권자의 선택과 무관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제20대 대선 선심위는 총 4건의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하였다.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선거기사의 공정정보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 원외 정당이 자당후보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구체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광고를 반복하여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제20대 대선 선심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넘어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 게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문사에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

14)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조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15)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3](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3)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현황 참조.

<그림 2> 의견광고 심의기준 위반 사례

The JoongAng 2021년 11월 30일 36인 댓글

### 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최소 3,318억원 배임의 공범”

대장동 비리「국민특검」, 11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장 전달! 화천대유 등이 출자액의 2천배가 넘는 8,571억원의 총수익 갖도록 배임!  
 “검찰이 국민의 이런 노력에도 전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직무유기죄’의 책임 져야 할 것” 경고 첩부!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민재판부가 구성될 것이며, 국민적 심판까지 피할 수 없을 것!”

대상동 국민특검 ‘국민 기소장’	공소사실 (범죄사실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신자: 국민특검</li> <li>수신자: 국민재판부</li> <li>피고인: 이재명</li> <li>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li> <li>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0조 제2항, 제30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고인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와 책임이 있다. 성남시청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2인주주(50%+1주인)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독권자이며 최종 결정자이자 최고 책임자였다. ‘대장동 개발계획’ ‘성남의 땅에 대한 출자 승인’ 등 최소한 12개 이상의 공문서 작성 결재·인사 시점을 통해, 그 과정에서 ‘성남의 땅’이란 단문 용어 사용으로 수백억원가 상반례를 피해 가게 하고, 일각에서 비위를 국뽕부 지평에 반영하여 87%로 대폭 낮추유위를 받아 상하 도지 감사청의 정당성을 훼손하였으며, 용지할도 단조 계획보다 높은 분양 가구를 늘림으로써 막대한 이익이 나오도록 하여 화천대유, 천하무선 등 민간 출자사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하였다.</li> <li>피고인은 호라이더 배당과 환수를 포기하는 업무 위해 행위를 하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할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비해서 매각이라도 되어 일정한 수익이 보였다는 사업장을 알면서도 화천대유 등 민간인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도록 하기 위해 성남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유동규)에 대해 ‘이익을 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출자자인 7%, 30%출연원에 불과한 화천대유 민간 출자사들이 배당금 등 총수익이 2천배가 넘는 8,571억원을 갖도록 한 반면, 출자 지분의 절반 29억원을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50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시와 공사가 큰 손해가 나도록 했다. 피고인은 공사의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를 승인 또는 발령하는 방법으로 위 유동규 등과 공모하여, 성남시와 공사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li> <li>피고인의 업무 위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제3자의 이익 취득 피고인은 화천대유 대주주 겸임해, 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파사업팀 부사장염태완 장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9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간접적인 요청에 따라 급습사 주드 컨소시엄으로 된 ‘성남의 땅’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 선정되도록 리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하였다.</li> </ol>

2021년 11월 30일 부동산비리 국민특검 (삼일대교 고영주 전 남부지검 검사장, 공동대표 손기호)

‘문재인 총독죄마 정권 혁명!’ 당월 가입신청: ☎ 02-717-1948, 010-3620-5142(문자)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이 광고는 아무런 대우도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당월 가입신청 시 당월 당원권 부여를 위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보실것입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4-0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위원회

026 2-15 13ur

The JoongAng 2021년 11월 25일 36인 댓글

###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권교체	정권유지
자유시장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의 나라!	국민을 갈라치고 끼리끼리 이권 나눠먹는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의 불법적 입찰, 위선과 부패에 맞서 싸운 대통령이 인척과 공직 자유와 특권 전권 국가정권으로 자유와 정의를 팔아 팔 피우는 나라.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위한 대북 평화</li> <li>○ 시장을 존중할 수만 200년과 공급경제, 민간 영리와 재건, 경제개혁을 통한 달성 1주백년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완화 총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부동산 거래도 시장 자율.</li> <li>○ 탈원전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전기료 인상 택지, 원금 뿌리기 아닌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모택동 확대로 청년과 여성 창업자 지원, 중부권 최첨단 연구개발 장인, 역동적 성장, 따뜻한 복지</li> <li>○ 법원 사안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판과 상식을 관철시킨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 부인에 대한 여론의 의혹선등에 으쳐서 200여명의 지지가 흐르는 후보가 대통령인 나라.</li> <li>○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필요로 정치하는 사익집단의 수단,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후보 사장에 양성평등 정책 집행하고 육아휴직 확대.</li> <li>○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강력한 방어벽에 의해, 북한의 핵·미사일 한 발에 국민 수백만명이 희생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킬 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당당한 외교와 존엄한 안보의 한미동맹을 재건, 원만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대화와 평화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보유세, 용적률 허가제 등으로 국민 생활과 시민사회를 통해 억압, 가족과 이웃에 대한 배려적 박탈과 상습적인 거짓말 횡행, 국가 권력 남용 일삼, 불의한 이념에 의한 격리지역 이권 사회</li> <li>○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파른 폭등시켜 국민들의 재산소멸 불평등 극대화,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공시지가 폭등 등 세금폭탄으로 일거리 팔을 기약시, 국면은 갈라지기.</li> <li>○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50조원이나 되는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부과, 스위스에서는 국민이 기부한 탄소 세무기 정책 시행, 국가가 일일이 책임지는 전세주거 경제정책</li> <li>○ 전과 4범주와 및 공무원 사정, 도로교통법위반 유주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원인 손상, 선거법 위반(제) 가족에 대해 재판적 박탈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li> <li>○ 여성가족부 장관 심상정 장관 등으로 개명 공약했으나 여론 과반이 재지 찬성(1,20~11리얼미터),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공약했으나 2000여대 60%가 반대(1,18~19 우리리서치)</li> <li>○ 국유재산 이차일 시점 등 대한민국을 거대한 허무기를 고조화하고 있는 북한과 원형이 되어 강한 인본론자를 전향당이라 쓰는 나라, 우리들 무장해제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종전선언으로 미군철수를 선포, 대북 각종 결속하고 지극.</li> </ul>

‘문재인 총독죄마 정권 혁명!’ 당월 가입신청: ☎ 02-717-1948, 010-3620-5142(문자)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이 광고는 아무런 대우도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당월 가입신청 시 당월 당원권 부여를 위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보실것입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4-0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위원회

026 2-15 13ur

또한 후보자나 정당의 홍보자료 전문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경우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칼럼을 게재한 경우에도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하여 언론사가 이를 이행했다.

<그림 3> 주의사실 게재 결정 이행사례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보는 지난 1월 7일자 11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언론미디어는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보도와 평론을 제공하고 국민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와 평론의 자유를 보장함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대표민주정을 실현하는 헌법상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선의의 선거보도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언론미디어의 보도나 논평이 ‘특정 선거’를 전제로 ‘특정한 후보자’의 당락을 위해 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를 받게 된다.<sup>17)</sup>

앞서 소개한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받은 칼럼을 포함하여 제20대 대선 선심위에서는 12건의 내·외부 필진의 칼럼 또는 기고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칼럼 또는 기고는 일반기사와 달리 엄격한 사실성을 요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측면이 있으나, ‘○후보는 국민의 마지막 선택이다. 국민 모두는 ○후보야말로 국민이 원해서 나온 인물임을 주목하고 힘을 실어주자’, ‘한마디로 완전 자격미달이다. 무식한 발언만 줄줄이 쏟아내고 써준 원고나 읽는 그런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다. △가 역대 최고의 후보라면 ○은 역대 최악의 후보다’ 등과 같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편파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의 정도가 심할 경우, 경고 등의 제재를 통해 반복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제20대 대선 선심위는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 12건을 심의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3 제6항(제8조의2 제6항 준용)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사의 불공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대 대선 선심위는 후보자 및 언론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여 각 시정요구대상기사가 언론의 자유 영역 안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

17) 박용상 (2013), <언론의 자유>, 서울: 박영사, 910-911면.




는 언론 고유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는지, 보도내용의 사실관계에 오류 또는 과장이 있었는지, 보도로 인해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건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결정을, 7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제20대 대선 선심위 운영 평가

이번 제20대 대선 선심위는 역대 대선 선심위 중에 최다의 제재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선거기사의 공정성 확보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주의사실 게재’ 결정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제재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언론사와 독자에게 공정보도 의무를 환기하고 불공정보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sup>18)</sup>

다만 이번 대선 선심위도 선거일 전후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기구라는 점에서 연속 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전문성의 축적 등에 한계<sup>19)</sup>가 있으며, 주요 대상매체인 종이신문의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독수입이 종이신문사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종이신문의 발행부수나 열독률이 1조 893억 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비의 집행 기준으로 여전히 엄중한 의미를 가지는 등 종이신문의 발행과 이용이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지니는데 비해, 실제 열독률, 열독시간, 정기구독률은 크게 감소하면서 매체가 가졌던 영향력과 신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sup>20)</sup>에서 선거기사와 심의에 대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심도 함께 하락되지 않았는지 우려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와 같은 제20대 대선 선심위의 운용성과와 한계점을 향후 효율적인 선거기사심의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언론미디어가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18) 제20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 발간 예정)

19)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후로 한시적으로 설치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 3. 9. 실시)'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 실시)'를 위하여 2개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였다.

20)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021 신문을 말한다 - 이용자 FGI를 통해 본 종이신문의 오늘과 내일> 6~10면 참조.